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2월 14일

사천읍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한 *욱	한 *욱 1976-03-10	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운동장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2-04